|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특종설비 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령 제4호  <중화인민공화국 특종설비 안전법>이 2013년 6월 29일의 중화인민공화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習近平  2013년 6월 29일  **목 차**  **제1장** 총 칙  **제2장** 생산, 경영 및 사용  **제1절** 일반규정  **제2절** 생산  **제3절** 경영  **제4절** 사용  **제3장** 검사, 검측  **제4장** 감독관리  **제5장** 사고응급구조 및 조사처리  **제6장** 법적 책임  **제7장**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 특종설비 안전업무를 보강하고 특종설비 사고를 예방하고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사회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특종설비의 생산(설계, 제조, 설치, 개조, 수리 포함), 경영, 사용, 검사, 검측 및 특종설비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이 법에서 특종설비라 함은 인신과 재산 안전에 비교적 큰 위험성이 있는 보일러, 압력용기(가스통 포함), 압력파이프, 엘리베이터, 크레인기계, 승객용 삭도, 대형 유흥시설, 장(공장)내 전용 기동차량, 그리고 법률, 행정법규에서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기타 특종설비를 가리킨다.  국가는 특종설비에 대하여 목록관리를 실시한다. 특종설비 목록은 국무원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에서 제정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한다.  **제3조** 특종설비안전 업무는 안전제일, 예방위주, 에너지절감 및 환경보전, 종합정비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는 특종설비의 생산, 경영, 사용 전반과정에 대한 분류별 안전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5조** 국무원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는 전국의 특종설비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 특종설비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6조**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특종설비안전 업무에 대한 지도를 보강하고 유관부서에서 법에 따라 감독관리 직책을 수행하도록 독촉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조율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 중에서 존재하는 문제를 제때에 조율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제7조** 특종설비 생산, 경영, 사용업체는 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특종설비안전 및 에너지절감 책임 제도를 구축, 건전히 하고 특종설비안전 및 에너지관리를 강화하고 특종설비의 생산, 경영, 사용안전을 보장하여 에너지절감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8조** 특종설비의 생산, 경영, 사용, 검사, 검측은 마땅히 특종설비안전 기술규범과 관련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종설비안전 기술규범은 국무원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에서 제정한다.  **제9조** 특종설비 업계협회는 마땅히 업계자율을 보강하고 업계 신의성실 체계건설을 추진하여 특종설비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시켜야 한다.  **제10조** 국가는 특종설비안전과 관련되는 과학기술연구를 지원하고 선진기술과 선진 관리방법의 보급과 응용을 장려하며, 특수한 공헌이 있는 단위와 개인을 포상한다.  **제11조**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는 특종설비안전 선전교육을 강화하고 특종설비안전 지식을 보급시켜 특종설비에 대한 사회공중의 안전의식을 증강시켜야 한다.  **제12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든지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와 유관부서에 특종설비안전과 관련되는 불법행위를 고발할 수 있으며, 고발을 접한 부서는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생산, 경영, 사용**  **제1절 일반규정**  **제13조** 특종설비의 생산, 경영, 사용업체 및 그 주요책임자는 그가 생산, 경영,사용하는 특종설비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특종설비의 생산, 경영, 사용업체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특종설비안전 관리인원, 검측인원 및 작업인원을 배치하고 동시에 그에 대한 필요한 안전교육과 기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특종설비안전 관리인원, 검측인원 및 작업인원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에야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특종설비안전 관리인원, 검측인원 및 작업인원은 안전 기술규범과 관리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여 특종설비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5조** 특종설비의 생산, 경영, 사용업체는 그가 생산, 경영, 사용하는 특종설비에 대해 스스로의 검측과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국가에서 검사하도록 규정한 특종설비에 대해서는 제때에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특종설비에 신소재, 신기술, 신공학을 사용하여 안전 기술규범의 요구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안전 기술규범에서 요구하지 않았거나 안전성능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국무원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국무원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는 지체 없이 안전기술 자문기구 또는 유관 전문기구에 의뢰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결과는 국무원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생산, 사용에 투입할 수 있다.  국무원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는 적시에 사용하도록 허용한 신소재, 신기술, 신공학과 관련되는 기술요구를 안전 기술규범에 넣어야 한다.  **제17조** 국가는 특종설비안전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2절 생산**  **제18조** 국가는 분류 감독관리 원칙에 따라 특종설비 생산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특종설비 생산업체는 아래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동시에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의 허가를 얻은 후에야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1) 생산에 필요한 전문기술인원을 확보할 것  (2) 생산에 필요한 장비, 시설 및 작업장소가 있을 것  (3) 건전한 품질보장, 안전관리 및 직장책임 제도가 구비되었을 것.  **제19조** 특종설비 생산업체는 특종설비 생산이 안전 기술규범과 관련 표준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그가 생산하는 특종설비의 안전성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안전성능요구와 에너지효율지표에 부합되지 않거나 국가에서 명분으로 도태시킨 특종설비는 생산할 수 없다.  **제20조** 보일러, 가스통, 산소창, 승객용 삭도, 대형 유흥시설의 설계문건은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에서 승인한 검사기구의 감정을 받아야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특종설비 제품, 부품 또는 시제품의 특종설비 신제품, 신부품, 그리고 특종설비에 사용한 신소재가 안전 기술규범의 요구에 따라 안전성 형식시험 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에서 승인한 검사기구의 형식시험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특종설비를 출고할 때에는 마땅히 안전 기술규범에서 요구한 설계문건, 제품품질 합격증명서, 설치 및 사용 유지보수설명서, 감독검사증명서 등 관련 기술서류와 문건을 첨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특종설비의 뚜렷한 위치에 제품명패, 안전경고표지 및 설명을 장착하여야 한다.  **제22조** 엘리베이터의 설치, 개조, 수리는 반드시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또는 그가 의뢰한, 이 법에 따라 상응한 허가를 취득한 업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엘리베이터 제조업체가 기타 업체에 엘리베이터 설치, 개조,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개조, 수리에 대한 안전지도와 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아울러 안전 기술규범의 요구에 따라 조정 검증과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 특종설비를 설치, 개조, 수리하는 시공업체는 시공하기 전에 실시할 특종설비의 설치, 개조, 수리상황을 서면으로 직할시 또는 구를 설치한 시급 인민정부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 특종설비 설치, 개조, 수리가 완료된 후 설치, 개조, 수리 시공업체는 검수 후 30일 내에 관련 기술 자료와 문건을 특종설비 사용업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특종설비 사용업체는 마땅히 이를 당해 특종설비 안전기술 보존서류에 보관시켜야 한다.  **제25조** 보일러, 압력용기, 압력파이프소자 등 특종설비 제조과정과 보일러, 압력용기, 압력파이프, 엘리베이터, 크레인, 승객용 삭도, 대형 유흥시설의 설치, 개조, 중대 수리과정은 안전 기술규범 요구에 따라 특종설비 검사기구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감독검사에 불합격인 경우에는 출고 또는 사용에 교부할 수 없다.  **제26조** 국가는 결함 특종설비 리콜 제도를 구축한다. 생산원인으로 특종설비 안전에 피해를 주는 동일 성격의 결함이 있는 경우 특종설비 생산업체는 지체 없이 생산을 중지하고 스스로 리콜을 하여야 한다.  국무원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에서 특종설비를 리콜을 해야 하나 리콜하지 아니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 특종설비 생산업체에 리콜을 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제3절 경 영**  **제27조** 특종설비 판매업체에서 판매하는 특종설비는 안전 기술규범과 관련 표준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그 설계문건, 제품품질합격증명서, 설치 및 사용 유지보수설명서, 감독검사증명서 등 관련 기술 자료와 문건이 완비하여야 한다.  특종설비 판매업체는 특종설비 검사검수 및 판매기록 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생산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특종설비, 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인 특종설비, 그리고 국가에서 명문으로 도태시켰거나 이미 폐기한 특종설비 판매는 금지된다.  **제28조** 특종설비 렌탈업체에서는 생산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특종설비 또는 국가에서 명문으로 도태시켰거나 이미 폐기한 특종설비, 그리고 안전 기술규범 요구에 따라 유지보수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검사에 불합격인 특종설비를 렌탈할 수 없다.  **제29조** 특종설비 렌탈기간의 사용관리와 유비보수 의무는 특종설비 렌탈업체에서 부담하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0조** 수입 특종설비는 우리나라의 안전 기술규범 요구에 부합되고 검사에 합격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특종설비 생산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수입 특종설비에 첨부한 기술 자료와 문건은 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그 설치 및 사용 유지보수설명서, 제품명패, 안전경고마크 및 설명은 중문을 사용하여야 한다.  특종설비의 수출입검사는 수출입상품검사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 특종설비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지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에 사전 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절 사 용**  **제32조** 특종설비 사용업체는 생산허가를 취득하고 검사에 합격된 특종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국가에서 명문으로 도태시켰거나 이미 폐기한 특종설비 사용은 금지된다.  **제33조** 특종설비 사용업체는 특종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또는 사용 후 30일 내에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에 사용등기를 처리하고 사용등기증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등기마크는 당해 특종설비의 뚜렷한 위치에 장착하여야 한다.  **제34조** 특종설비 사용업체는 직장책임, 폐해정비, 응급구조 등 안전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작업규칙을 제정함으로써 특종설비의 안전적인 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5조** 특종설비 사용업체는 특종설비 안전기술 보존서류를 구축하여야 한다. 안전기술 보존서류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종설비 설계문건, 제품품질 합격증명서, 설치 및 사용 유지보수설명서, 감독검사증명서 등 관련 기술 자료와 문건  (2) 특종설비의 정기검사와 정기 자체검사기록  (3) 특종설비의 일상 사용상황 기록  (4) 특종설비 및 그 부속 기기, 계기의 유지보수 기록  (5) 특종설비의 운행고장 및 사고 기록.  **제36조** 엘리베이터, 승객용 삭도, 대형 유흥시설 등 공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종설비 운영 사용업체는 특종설비의 사용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고 특종설비 안전관리기구를 설립하거나 전문직 특종설비 안전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기타 특종설비 사용업체는 상황에 비추어 특종설비 안전관리기구를 설립하거나 전문직, 겸직 특종설비 안전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37조** 특종설비의 사용은 마땅히 규정한 안전거리, 안전 예방조치가 있어야 한다.  특종설비 안전과 관련되는 건축물, 부속시설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8조** 공유 특종설비인 경우 공유자는 건물관리서비스업체 또는 기타 관리인에게 특종설비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인은 이 법에서 규정한 특종설비 사용업체 의무를 이행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공유자가 위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유자 또는 실제관리자가 관리의무를 이행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제39조** 특종설비 사용업체는 그가 사용하는 특종설비에 대한 일상적인 유지보수와 정기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특종설비 사용업체는 그가 사용하는 특종설비의 안전부품, 안전보호 장치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 조정, 점검수리를 실시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40조** 특종설비 사용업체는 안전 기술규범의 요구에 따라 검사합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특종설비 검사기구에 정기 검사요구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종설비 검사기구는 정기 검사요구를 받은 후 안전 기술규범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안전성능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종설비 사용업체는 정기검사 마크를 당해 특종설비의 뚜렷한 위치에 장착하여야 한다.  정기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인 특종설비는 계속 사용할 수 없다.  **제41조** 특종설비 안전 관리인원은 특종설비 사용상황에 대한 일상적 검사를 실시하고 문제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특종설비 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체 없이 본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종설비 작업인원이 작업 중에 사고폐해 또는 기타 불안전요소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특종설비 안전 관리인원과 업체 관련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종설비 운행이 불정상인 경우 특종설비 작업인원은 조작규칙에 따라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2조** 특종설비에 고장이 생겼거나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특종설비 사용업체는 그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사고폐해를 제거하여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43조** 승객용 삭도, 대형 유흥시설을 매일 사용하기 전에 그 운영사용업체는 시운행과 정례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아울러 안전부품과 안전보호 장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엘리베이터, 승객용 삭도, 대형 유흥시설의 운영사용업체는 엘리베이터, 승객용 삭도, 대형 유흥시설 안전사용설명서, 안전주의사항 및 경고표지를 승객들의 눈길이 쉽게 닫는 뚜렷한 위치에 장착하여야 한다.  공중이 엘리베이터, 승객용 삭도, 대형 유흥시설을 탑승하거나 조작하는 경우에는 안전사용설명서와 안전주의사항 요구를 준수하고 관련 업무직원의 관리와 지휘에 복종하여야 하며, 운행이 정상적인 아닌 경우에는 안전지침에 따라 질서 있게 철거하여야 한다.  **제44조** 보일러 사용업체는 안전 기술규범의 요구에 따라 보일러의 수(매체)질을 처리하는 동시에 특종설비검사기구의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일러 세척에 종사하는 경우 안전 기술규범의 요구에 따라 진행하는 동시에 특종설비검사기구의 감독검사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45조** 엘리베이터의 유지보수는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를 취득한 설치, 개조, 수리업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업체는 유지보수 중에서 안전 기술규범 요구를 엄격히 집행하여 그 유지보수 엘리베이터의 안전성능을 보장하여야 하며, 아울러 현장 안전예방 조치가 실현되도록 책임지고 시공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엘리베이터의 유지보수업체는 그 유지보수 엘리베이터의 안전성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고장 통지를 접한 후에는 지체 없이 현장에 가서 필요한 응급 구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6조** 엘리베이터를 사용에 투입한 후 엘리베이터 제조업체는 그가 제조한 엘리베이터의 안전운행 상황에 대한 추적 조사와 상황파악을 실시하고 엘리베이터의 유지보수업체 또는 사용업체에서 유지보수와 안전운행에서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개선 건의를 제기하고 필요한 기술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엘리베이터에 엄중한 사고폐해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엘리베이터 사용업체에 고지하여야 하며, 아울러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엘리베이터 제조업체는 조사를 통해 장악한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7조** 특종설비의 개조, 수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규정에 따라 사용등기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밟아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48조** 특종설비에 엄중한 사고폐해가 존재하여 개선 또는 수리가치가 없거나 안전 기술규범에서 규정한 기타 폐기조건에 도달한 경우 특종설비 사용업체는 마땅히 법에 따라 폐기의무를 이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당해 특종설비의 사용기능을 제거하여야 하며, 아울러 전에 등기를 처리한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에서 사용등기증서 말소수속을 밟아야 한다.  전 항에서 규정한 폐기조건 그 밖의 특종설비가 설계 사용연한에 도달하였으나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 기술규범 요구에 따라 검사 또는 안전평가를 거쳐야 하며 아울러 사용 등기증서 변경수속을 밟아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계속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검사, 검측 및 유지보수 등 조치를 보강하여 사용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9조** 이동식 압력용기, 가스통 주입업체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아울러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의 허가를 얻어야 주입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1) 주입과 관리에 필요한 관리인원과 기술인원을 확보할 것  (2) 주입과 관리에 필요한 주입장비, 검측수단, 장소와 건물, 기구, 안전시설을 갖출 것  (3) 건전한 주입 관리제도, 책임제도, 처리제도가 구축되었을 것.  주입업체는 주입 전후의 검사, 기록제도를 구축하여야 하며, 안전 기술규범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이동식 압력용기와 가스통 주입은 금지된다.  가스통 주입업체는 가스사용자에게 안전 기술규범 요구에 부합되는 가스통을 제공하고 가스사용자에게 가스통 안전사용을 지도하여야 하며, 아울러 안전 기술규범 요구에 따라 가스통 사용등기를 처리하고 시의 적절하게 정기검사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장 검사, 검측**  **제50조** 이 법에서 규정한 감독검사, 정기검사에 종사하는 특종설비검사기구, 그리고 특종설비 생산, 경영, 사용에 검측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종설비검측기구는 아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동시에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의 심사 허가를 받아야 검사, 검측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검사, 검측업무에 필요한 검사, 검측인원을 확보할 것  (2) 검사, 검측업무에 필요한 검사, 검측계기와 장비를 갖출 것  (3) 건전한 검사, 검측관리제도와 책임제도가 구축되었을 것.  **제51조** 특종설비 검사, 검측기구의 검사, 검측인원은 시험을 거쳐 검사, 검측인원 자격을 취득하여야 검사, 검측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특종설비 검사, 검측기구의 검사, 검측인원은 동시에 2개 이상의 검사, 검측기구에서 근무할 수 없으며, 직업종사기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52조** 특종설비 검사, 검측업무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 기술규범의 요구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특종설비 검사, 검측기구 및 그 검사, 검측인원은 법에 따라 특종설비 생산, 경영, 사용업체에 안전하고 믿음직하고 편리하고 신의 성실한 검사, 검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3조** 특종설비 검사, 검측기구 및 그 검사, 검측인원은 마땅히 객관, 공정, 시의 적절하게 검사, 검측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아울러 검사, 검측결과와 감정결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특종설비 검사, 검측기구 및 그 검사, 검측인원이 검사, 검측 중에서 특종설비에 엄중한 사고폐해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관단위에 고지하여야 하며, 아울러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는 특종설비 검사, 검측기구의 검사, 검측결과와 감정결론에 대한 감독 표본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복 표본검사는 피면하여야 한다. 감독 표본검사결과는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4조** 특종설비 생산, 경영, 사용업체는 안전 기술규범의 요구에 따라 특종설비 검사, 검측기구 및 그 검사, 검측인원에게 특종설비 관련 자료와 필요한 검사, 검측조건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울러 그 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55조** 특종설비 검사, 검측기구 및 그 검사, 검측인원은 검사, 검측과정에서 알게 된 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진다.  특종설비 검사, 검측기구 및 그 검사, 검측인원은 관련 특종설비의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으며, 특종설비를 추천하거나 제조 또는 폐기처분을 감독 관리할 수 없다.  **제56조** 특종설비 검사기구 및 그 검사인원이 검사업무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특종설비 생산, 경영, 사용업체를 괴롭힌 경우 특종설비 생산, 경영, 사용업체는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에 고발할 수 있으며, 고발을 접한 부서는 지체 없이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57조**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특종설비 생산, 경영, 사용업체와 검사, 검측기구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는 학교, 유치원 및 병원, 자동(기)차역, 여객터미널, 백화점, 체육장, 전시관, 공원 등 공중 집결장소의 특종설비에 대해 중점적인 안전 감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8조**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에서 이 법에서 규정한 허가업무를 실행할 때 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에서 규정한 조건과 절차, 그리고 안전 기술규범의 요구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허가를 할 수 없다.  **제59조**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에서 이 법에서 규정한 허가를 실시할 때 그 수리, 심사, 허가절차를 공개하여야 하며, 아울러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60조**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사용등기를 처리한 특종설비에 대하여 완벽한 감독관리 보존서류와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폐기조건에 도달한 특종설비는 지체 없이 특종설비사용업체를 독촉하여 법에 따라 폐기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1조**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에서 법에 따라 감독검사 직책을 수행할 때 아래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현장에 진입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특종설비 생산, 경영, 사용업체와 검사, 검역기구의 주요책임자 및 기타 관계자를 조사하고 관련 상황을 파악  (2) 고발 또는 취득한 불법용의 증거에 근거하여 특종설비 생산, 경영, 사용업체와 검사, 검역기구의 관련 계약, 세금계산서,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사열, 복제  (3) 안전 기술규범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엄중한 사고폐해가 존재하는 증거가 있는 특종설비를 차압, 압류  (4) 시장에 유입된, 폐기조건에 도달하거나 이미 폐기한 특종설비를 차압, 압류  (5) 이 법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을 결정.  **제62조**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에서 법에 따라 그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법의 규정과 안전 기술규범 요구를 위반한 행위 또는 특종설비에 사고폐해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서면으로 특종설비안전감찰 지령을 발급하여 유관업체에서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하여 사고폐해를 시정하거나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긴급한 상황에서 유관업체에 긴급처리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후에 특종설비안전감찰지령을 보완 발급하여야 한다.  **제63조**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에서 법에 따라 그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불법행위나 특종설비에 엄중한 사고폐해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유관업체에 즉시 불법행위를 중지하고 조치를 취하여 사고폐해를 제거하도록 명령하여야 하며, 동시에 지체 없이 상급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접한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불법행위, 엄중한 사고폐해에 대한 처리가 현지 인민정부와 유관부서의 지원, 협조가 필요한 경우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는 현지 인민정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아울러 기타 유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현지 인민정부와 기타 유관부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64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이미 기타 지역에서 허가를 취득한 특종설비 생산업체에 다시 허가를 취득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이미 기타 지역에서 검사에 합격된 특종설비를 다시 검사받도록 요구할 수 없다.  **제65조**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의 안전 감찰인원은 관련 법률, 법규를 숙지하고 상응하는 전문지식과 업무경험을 갖추고 특종설비 안전행정 법 집행증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특종설비 안전 감찰인원은 직무에 충실하고 원칙을 고수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여야 한다.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에서 안전감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명 이상의 특종설비 안전 감찰인원이 실시하여야 하며, 아울러 유효한 특종설비 안전행정 법 집행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6조**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에서 특종설비 생산, 경영, 사용업체와 검사, 검측기구에 대해 감독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매회 감독검사 내용, 발견한 문제 및 처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동시에 감독검사에 참가한 특종설비 안전 감찰인원과 검사대상 업체 유관책임자의 서명을 받고 보존서류로 철하여야 한다. 검사대상 업체 유관책임자가 서명을 거절하는 경우 특종설비 안전 감찰인원은 해당 상황을 기록하여 안건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67조**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 및 그 업무직원은 특종설비를 추천하거나 제도 또는 폐기처분을 감독 관리할 수 없으며, 직책 수행 중에서 알게 된 상업비밀 유지의무를 진다.  **제68조** 국무원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는 정기적으로 특종설비안전 전반 상황을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장 사고 응급구제 및 조사처리**  **제69조** 국무원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특종설비 중대사고 응급구제 대응책을 제정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국가 돌발사건 응급구제체계에 넣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그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특종설비사고 응급 대응책을 제정하고 상응하는 응급처분 및 구제체계를 구축하거나 그에 포함시켜야 한다.  특종설비 사용업체는 특종설비사고 응급 대응책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응급 훈련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70조** 특종설비 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발생업체는 응급 대응책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구조를 실시하고 사고확대를 방지하여 인신사상과 재산 손실을 감소하고 사고현장과 관련 증거를 보호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사고 발생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와 유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는 사고보고를 접한 후 조속히 상황을 조사확인하고 지체 없이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동시에 규정에 따라 급별로 상급에 보고하여야 한다. 필요시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에서는 사고 상황을 월급 보고할 수 있다. 특별히 중대한 사고,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무원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는 지체 없이 국무원에 보고하는 동시에 국무원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 등 유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고와 관련되는 업체와 인원은 사고 상황을 지체 보고, 거짓보고 또는 기만할 수 없으며 관련 증거를 은닉, 훼멸하거나 고의적으로 사고현장을 파괴할 수 없다.  **제71조** 사고 발생지 인민정부는 사고보고를 접한 후 마땅히 법에 따라 응급 대응책을 가동하여 응급조치를 취하고 응급구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2조** 특종설비가 특별히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위임한 유관부서에서 사고조사팀을 묶어 조사를 실시한다.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무원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에서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사고조사팀을 묶어 조사를 실시한다.  비교적 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에서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사고조사팀을 묶어 조사를 실시한다.  일반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를 설치한 시급 인민정부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에서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사고조사팀을 묶어 조사를 실시한다.  사고조사팀은 법에 의거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 사고조사 실시부서는 사고조사보고서를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아울러 직상급 인민정부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유관부서와 업체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사고책임 업체와 인원의 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사고책임업체는 법에 따라 시정개선 조치를 취하여 같은 사고의 방지를 예방하여야 한다.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책임업체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장 법적 책임**  **제74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득하지 않고서 특종설비 생산 활동에 종사한 경우 생산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불법 제조한 특종설비를 몰수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이미 설치, 개조, 수리를 한 경우 원상복구하도록 명령하거나 또는 허가를 득한 업체에서 기한 내에 다시 설치, 개조, 수리하도록 명령한다.  **제75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특종설비 설계문건에 대한 감정을 받지 않고서 제멋대로 제조에 사용한 경우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불법 제조한 특종설비를 몰수하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6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형식시험을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7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특종설비를 출고할 때 안전 기술규범의 요구에 따라 관련 기술 자료와 문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조, 판매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제78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특종설비 설치, 개조, 수리 시공업체에서 시공 전에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에 서면보고를 하지 않고 바로 시공을 한 경우, 또는 검수 후 30일 내에 관련 기술 자료와 문건을 특종설비 사용업체에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9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특종설비를 제조, 설치, 개조, 중대 수리를 하거나 보일러 세척과정에서 감독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기한이 지나도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생산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80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엘리베이터제조업체에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안전기술규범의 요구에 따라 엘리베이터 조정검증, 성능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엘리베이터의 안전 운행상황에 대한 추적 조사와 상황파악을 할 때 엄중한 사고폐해를 발견하고도 지체 없이 엘리베이터사용업체에 고지함과 동시에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81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특종설비생산업체에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생산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생산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1) 생산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허가증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또는 허가범위를 벗어나서 생산한 경우  (2) 특종설비에 동일성 결함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지체 없이 생산을 중지하고 리콜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의 규정을 위한하고 특종설비생산업체에서 국가에서 명문으로 도태시킨 특종설비를 생산, 판매, 교부한 경우 생산, 판매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불법 생산, 판매, 교부한 특종설비를 몰수하고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특종설비생산업체에서 생산허가증을 개찬, 전매, 매각, 대차한 경우 생산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생산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82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특종설비 경영업체에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그 경영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불법경영 특종설비를 몰수하고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1)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생산하거나 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인 특종설비를 판매, 렌탈한 경우  (2) 국가에서 명문으로 도태시켜 이미 폐기된 특종설비를 판매, 렌탈하거나 안전기술규범의 요구에 따라 특종설비를 유지보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특종설비판매업체에서 검사검수와 판매기록 제도를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수입 특종설비에 대해 사전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특종설비생산업체에서 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인 특종설비를 판매, 교부한 경우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생산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83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특종설비사용업체에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특종설비 사용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특종설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규정에 따라 사용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특종설비 안전기술 보존서류를 건립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기술 보존서류가 규정한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에 따라 사용등기마크, 정기검사마크를 장착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용하는 특종설비에 일상적 유지보수와 스스로의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는 특종설비의 안전부품, 안전보호 장치에 대해 정기검사, 점검수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기록도 없는 경우  (4) 안전 기술규범의 요구에 따라 적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검사도 받지 아니한 경우  (5) 안전 기술규범의 요구에 따라 보일러의 수(매개물)질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6) 특종설비사고 응급 대응책을 제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84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특종설비사용업체에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그 특종설비 사용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생산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인 특종설비 또는 국가에서 명문으로 도태시켜 이미 폐기한 특종설비를 사용한 경우  (2) 특종설비에 고장이 생기거나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사고폐해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한 경우  (3) 특종설비에 엄중한 사고폐해가 존재하여 개조, 수리가치가 없거나 안전 기술규범에서 규정한 기타 폐기처분 조건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 폐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용등기증서 말소수속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85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이동식 압력용기, 가스통 주입업체에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주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1) 규정에 따라 주입 전후의 검사, 기록 제도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안전 기술규범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이동식 압력용기와 가스통을 주입한 경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제멋대로 이동식 압력용기 또는 가스통 주입활동에 종사한 경우 취체하고 불법 주입한 가스통을 몰수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제86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특종설비 생산, 경영, 사용업체에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특종설비 사용을 중지하거나 조업중지 정돈을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상응하는 자격을 구비한 특종설비 안전 관리인원, 검측인원 및 작업인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응하는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인원을 사용하여 특종설비 안전관리, 검측 또는 작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3) 특종설비 안전 관리인원, 검측인원 및 작업인원에 대해 안전교육과 기능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87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엘리베이터, 승객용 삭도, 대형 유흥시설 운영사용업체에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특종설비 사용을 중지하거나 조업중지 정돈을 명령하고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특종설비안전 관리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전문직 특종설비 안전 관리인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2) 매일 승객용 삭도, 대형 유흥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시운행과 정례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안전부품과 안전보호 장치에 대해 검사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엘리베이터, 승객용 삭도, 대형 유흥시설의 안전사용증명서, 안전주의사항 및 경고마크를 승객들의 눈길이 쉽게 닫는 뚜렷한 위치에 장착하지 아니한 경우.  **제88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제멋대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불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업체에서 이 법의 규정과 안전 기술규범의 요구에 따라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89조** 특종설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업체에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주요책임자에 대해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주요책임자가 국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동시에 법적 처분을 가한다.  (1) 특종설비 사고가 발생 시 지체 없이 구조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조사처리 기간에 임의로 직무를 이탈하거나 종적을 감춘 경우  (2) 특종설비사고를 지체 보고, 거짓 보고 또는 기만 보고를 한 경우.  **제90조** 사고가 발생한 책임을 지는 업체에 대해 법에 따라 상응하는 배상 등의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그 밖에 아래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1) 일반사고가 발생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비교적 큰 사고가 발생한 경우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91조**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업체 주요책임자가 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리더 책임이 있는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가하며, 국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법적 처분을 가한다.  (1) 일반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년도 연간소득 30%의 벌금을 부과한다.  (2) 비교적 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년도 연간소득 40%의 벌금을 부과한다.  (3)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년도 연간소득 60%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92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특종설비 안전 관리인원, 검측인원 또는 작업인원이 직무직책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업무규칙과 관련 안전규장 제도를 위반하여 사고를 빚어낸 경우 관련인원의 자격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93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특종설비 검사, 검측기구 및 그 검사, 검측인원이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동 기구에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해 0.5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기구 자격증서와 관련인원의 자격증을 회수 취소한다.  (1)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승인범위를 벗어나거나 상응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인원을 사용하여 검사, 검측에 종사하게 한 경우  (2) 안전 기술규범의 요구에 따라 검사, 검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검사, 검측결과와 감정결론을 발급하거나 검사, 검측결과와 감정결론이 엄중하게 사실을 왜곡한 경우  (4) 특종설비에 엄중한 사고폐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지체 없이 유관업체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즉시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5) 검사, 검측과정 중에서 알게 된 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6) 관련 특종설비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한 경우  (7) 특종설비를 추천하거나 제조 또는 폐기처분을 감독 관리한 경우  (8) 검사업무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유관업체를 괴롭힌 경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특종설비 검사, 검측기구의 검사, 검측인원이 동시에 2개 이상의 검사, 검측기구에서 직업종사를 한 경우 0.5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한다.  **제94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 및 그 업무직원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상급 기관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게 법적 처분을 가한다.  (1)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조건, 절차에 따라 허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특종설비의 생산, 사용 또는 검사, 검측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체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3) 특종설비 생산업체에서 이 법에서 규정한 조건을 더는 구비하지 아니하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증을 회수 취소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특종설비 생산, 경영, 사용 불법행위를 발견하고도 조사 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특종설비 검사, 검측기구에서 이 법에서 규정한 조건을 더는 구비하지 아니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그 승인을 철회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가 제시한 허위 검사, 검측결과와 감정결론 또는 검사, 검측결론과 감정결론이 엄중하게 사실을 왜곡한 행위에 대해 조사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5) 이 법의 규정과 안전 기술규범의 요구를 위반한 행위를 발견하거나 또는 특종설비에 사고폐해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6) 중대 불법행위 또는 특종설비에 엄중한 사고화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지체 없이 상급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보고를 접한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에서 지체 없이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7)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이미 기타 지역에서 허가를 취득한 특종설비생산업체에 허가를 중복 취득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이미 기타 지역에서 검사에 합격된 특종설비에 대해 중복 검사를 받도록 요구한 경우  (8) 특종설비를 추천하거나 제조 또는 폐기처분을 감독 관리한 경우  (9) 직무 수행에서 알게 된 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10) 특종설비 사고보고를 접하고도 지체 없이 본급 인민법원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규정에 따라 상부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1) 사고를 지체 보고, 누락 보고, 거짓 보고 또는 기만보고를 한 경우  (12) 사고구조 또는 사고조사 처리를 방애한 경우  (13)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부정을 행한 기타 행위.  **제95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특종설비 생산, 경영, 사용업체 또는 검사, 검측기구에서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에서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업중지 정돈을 명령하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특종설비 생산, 경영, 사용업체에서 제멋대로 차압, 압류된 특종설비나 그 주요부품을 사용, 교체, 전이, 훼손한 경우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생산허가증을 회수 취소하고 특종설비 사용등기증서를 말소한다.  **제96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에 의해 허가증이 회수 취소된 경우에는 허가증이 회수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특종설비안전 감독관리부서에서는 그 신규 허가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97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신, 재산 손실을 빚어낸 경우 법에 따라 민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민사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벌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그 재산으로 동시에 지불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먼저 부담한다.  **제98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관리 위반행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 처벌을 가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제7장 부 칙**  **제99조** 특종설비 행정허가, 검사 요금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00조** 군사장비, 핵시설, 항공우주설비에 사용하는 특종설비의 안전 감독관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철도기관차, 해상시설과 선박, 광산갱내에 사용하는 특종설비와 민항에 전문 사용하는 설비의 안전 감독관리, 건물의 건축시공, 시정공사 부지에 사용하는 크레인과 장(공장)내 전문 기동차량에 설치, 사용하는 감독관리는 유관부서에서 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101조**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特种设备安全法**  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第四号  《中华人民共和国特种设备安全法》已由中华人民共和国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三次会议于2013年6月29日通过，现予公布，自2014年1月1日起施行。  　　　　　　　　　　　　　　　　　 　中华人民共和国主席　习近平  　2013年6月29日  **目　录**  **第一章** 总 则  **第二章** 生产、经营、使用  **第一节** 一般规定  **第二节** 生 产  **第三节** 经 营  **第四节** 使 用  **第三章** 检验、检测  **第四章** 监督管理  **第五章** 事故应急救援与调查处理  **第六章** 法律责任  **第七章** 附 则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加强特种设备安全工作，预防特种设备事故，保障人身和财产安全，促进经济社会发展，制定本法。  **第二条** 特种设备的生产（包括设计、制造、安装、改造、修理）、经营、使用、检验、检测和特种设备安全的监督管理，适用本法。  本法所称特种设备，是指对人身和财产安全有较大危险性的锅炉、压力容器（含气瓶）、压力管道、电梯、起重机械、客运索道、大型游乐设施、场（厂）内专用机动车辆，以及法律、行政法规规定适用本法的其他特种设备。  国家对特种设备实行目录管理。特种设备目录由国务院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制定，报国务院批准后执行。  **第三条** 特种设备安全工作应当坚持安全第一、预防为主、节能环保、综合治理的原则。  **第四条** 国家对特种设备的生产、经营、使用，实施分类的、全过程的安全监督管理。  **第五条** 国务院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对全国特种设备安全实施监督管理。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对本行政区域内特种设备安全实施监督管理。  **第六条** 国务院和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对特种设备安全工作的领导，督促各有关部门依法履行监督管理职责。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建立协调机制，及时协调、解决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中存在的问题。  **第七条** 特种设备生产、经营、使用单位应当遵守本法和其他有关法律、法规，建立、健全特种设备安全和节能责任制度，加强特种设备安全和节能管理，确保特种设备生产、经营、使用安全，符合节能要求。  **第八条** 特种设备生产、经营、使用、检验、检测应当遵守有关特种设备安全技术规范及相关标准。  特种设备安全技术规范由国务院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制定。  第九条 特种设备行业协会应当加强行业自律，推进行业诚信体系建设，提高特种设备安全管理水平。  **第十条** 国家支持有关特种设备安全的科学技术研究，鼓励先进技术和先进管理方法的推广应用，对做出突出贡献的单位和个人给予奖励。  **第十一条** 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应当加强特种设备安全宣传教育，普及特种设备安全知识，增强社会公众的特种设备安全意识。  **第十二条** 任何单位和个人有权向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和有关部门举报涉及特种设备安全的违法行为，接到举报的部门应当及时处理。  **第二章 生产、经营、使用**  **第一节 一般规定**  **第十三条** 特种设备生产、经营、使用单位及其主要负责人对其生产、经营、使用的特种设备安全负责。  特种设备生产、经营、使用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配备特种设备安全管理人员、检测人员和作业人员，并对其进行必要的安全教育和技能培训。  **第十四条** 特种设备安全管理人员、检测人员和作业人员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取得相应资格，方可从事相关工作。特种设备安全管理人员、检测人员和作业人员应当严格执行安全技术规范和管理制度，保证特种设备安全。  **第十五条** 特种设备生产、经营、使用单位对其生产、经营、使用的特种设备应当进行自行检测和维护保养，对国家规定实行检验的特种设备应当及时申报并接受检验。  **第十六条** 特种设备采用新材料、新技术、新工艺，与安全技术规范的要求不一致，或者安全技术规范未作要求、可能对安全性能有重大影响的，应当向国务院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申报，由国务院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及时委托安全技术咨询机构或者相关专业机构进行技术评审，评审结果经国务院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批准，方可投入生产、使用。  国务院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应当将允许使用的新材料、新技术、新工艺的有关技术要求，及时纳入安全技术规范。  **第十七条** 国家鼓励投保特种设备安全责任保险。  **第二节 生 产**  **第十八条** 国家按照分类监督管理的原则对特种设备生产实行许可制度。特种设备生产单位应当具备下列条件，并经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许可，方可从事生产活动：  （一）有与生产相适应的专业技术人员；  （二）有与生产相适应的设备、设施和工作场所；  （三）有健全的质量保证、安全管理和岗位责任等制度。  **第十九条** 特种设备生产单位应当保证特种设备生产符合安全技术规范及相关标准的要求，对其生产的特种设备的安全性能负责。不得生产不符合安全性能要求和能效指标以及国家明令淘汰的特种设备。  **第二十条** 锅炉、气瓶、氧舱、客运索道、大型游乐设施的设计文件，应当经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核准的检验机构鉴定，方可用于制造。  特种设备产品、部件或者试制的特种设备新产品、新部件以及特种设备采用的新材料，按照安全技术规范的要求需要通过型式试验进行安全性验证的，应当经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核准的检验机构进行型式试验。  **第二十一条** 特种设备出厂时，应当随附安全技术规范要求的设计文件、产品质量合格证明、安装及使用维护保养说明、监督检验证明等相关技术资料和文件，并在特种设备显著位置设置产品铭牌、安全警示标志及其说明。  **第二十二条** 电梯的安装、改造、修理，必须由电梯制造单位或者其委托的依照本法取得相应许可的单位进行。电梯制造单位委托其他单位进行电梯安装、改造、修理的，应当对其安装、改造、修理进行安全指导和监控，并按照安全技术规范的要求进行校验和调试。电梯制造单位对电梯安全性能负责。  **第二十三条** 特种设备安装、改造、修理的施工单位应当在施工前将拟进行的特种设备安装、改造、修理情况书面告知直辖市或者设区的市级人民政府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  **第二十四条** 特种设备安装、改造、修理竣工后，安装、改造、修理的施工单位应当在验收后三十日内将相关技术资料和文件移交特种设备使用单位。特种设备使用单位应当将其存入该特种设备的安全技术档案。  **第二十五条** 锅炉、压力容器、压力管道元件等特种设备的制造过程和锅炉、压力容器、压力管道、电梯、起重机械、客运索道、大型游乐设施的安装、改造、重大修理过程，应当经特种设备检验机构按照安全技术规范的要求进行监督检验；未经监督检验或者监督检验不合格的，不得出厂或者交付使用。  **第二十六条** 国家建立缺陷特种设备召回制度。因生产原因造成特种设备存在危及安全的同一性缺陷的，特种设备生产单位应当立即停止生产，主动召回。  国务院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发现特种设备存在应当召回而未召回的情形时，应当责令特种设备生产单位召回。  **第三节 经 营**  **第二十七条** 特种设备销售单位销售的特种设备，应当符合安全技术规范及相关标准的要求，其设计文件、产品质量合格证明、安装及使用维护保养说明、监督检验证明等相关技术资料和文件应当齐全。  特种设备销售单位应当建立特种设备检查验收和销售记录制度。  禁止销售未取得许可生产的特种设备，未经检验和检验不合格的特种设备，或者国家明令淘汰和已经报废的特种设备。  **第二十八条** 特种设备出租单位不得出租未取得许可生产的特种设备或者国家明令淘汰和已经报废的特种设备，以及未按照安全技术规范的要求进行维护保养和未经检验或者检验不合格的特种设备。  **第二十九条** 特种设备在出租期间的使用管理和维护保养义务由特种设备出租单位承担，法律另有规定或者当事人另有约定的除外。  **第三十条**　进口的特种设备应当符合我国安全技术规范的要求，并经检验合格；需要取得我国特种设备生产许可的，应当取得许可。  进口特种设备随附的技术资料和文件应当符合本法第二十一条的规定，其安装及使用维护保养说明、产品铭牌、安全警示标志及其说明应当采用中文。  特种设备的进出口检验，应当遵守有关进出口商品检验的法律、行政法规。  **第三十一条** 进口特种设备，应当向进口地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履行提前告知义务。  **第四节 使 用**  **第三十二条** 特种设备使用单位应当使用取得许可生产并经检验合格的特种设备。  禁止使用国家明令淘汰和已经报废的特种设备。  **第三十三条** 特种设备使用单位应当在特种设备投入使用前或者投入使用后三十日内，向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办理使用登记，取得使用登记证书。登记标志应当置于该特种设备的显著位置。  **第三十四条** 特种设备使用单位应当建立岗位责任、隐患治理、应急救援等安全管理制度，制定操作规程，保证特种设备安全运行。  **第三十五条** 特种设备使用单位应当建立特种设备安全技术档案。安全技术档案应当包括以下内容：  （一）特种设备的设计文件、产品质量合格证明、安装及使用维护保养说明、监督检验证明等相关技术资料和文件；  （二）特种设备的定期检验和定期自行检查记录；  （三）特种设备的日常使用状况记录；  （四）特种设备及其附属仪器仪表的维护保养记录；  （五）特种设备的运行故障和事故记录。  **第三十六条** 电梯、客运索道、大型游乐设施等为公众提供服务的特种设备的运营使用单位，应当对特种设备的使用安全负责，设置特种设备安全管理机构或者配备专职的特种设备安全管理人员；其他特种设备使用单位，应当根据情况设置特种设备安全管理机构或者配备专职、兼职的特种设备安全管理人员。  **第三十七条** 特种设备的使用应当具有规定的安全距离、安全防护措施。  与特种设备安全相关的建筑物、附属设施，应当符合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  **第三十八条** 特种设备属于共有的，共有人可以委托物业服务单位或者其他管理人管理特种设备，受托人履行本法规定的特种设备使用单位的义务，承担相应责任。共有人未委托的，由共有人或者实际管理人履行管理义务，承担相应责任。  **第三十九条** 特种设备使用单位应当对其使用的特种设备进行经常性维护保养和定期自行检查，并作出记录。  特种设备使用单位应当对其使用的特种设备的安全附件、安全保护装置进行定期校验、检修，并作出记录。  **第四十条** 特种设备使用单位应当按照安全技术规范的要求，在检验合格有效期届满前一个月向特种设备检验机构提出定期检验要求。  特种设备检验机构接到定期检验要求后，应当按照安全技术规范的要求及时进行安全性能检验。特种设备使用单位应当将定期检验标志置于该特种设备的显著位置。  未经定期检验或者检验不合格的特种设备，不得继续使用。  **第四十一条** 特种设备安全管理人员应当对特种设备使用状况进行经常性检查，发现问题应当立即处理；情况紧急时，可以决定停止使用特种设备并及时报告本单位有关负责人。  特种设备作业人员在作业过程中发现事故隐患或者其他不安全因素，应当立即向特种设备安全管理人员和单位有关负责人报告；特种设备运行不正常时，特种设备作业人员应当按照操作规程采取有效措施保证安全。  **第四十二条** 特种设备出现故障或者发生异常情况，特种设备使用单位应当对其进行全面检查，消除事故隐患，方可继续使用。  **第四十三条** 客运索道、大型游乐设施在每日投入使用前，其运营使用单位应当进行试运行和例行安全检查，并对安全附件和安全保护装置进行检查确认。  电梯、客运索道、大型游乐设施的运营使用单位应当将电梯、客运索道、大型游乐设施的安全使用说明、安全注意事项和警示标志置于易于为乘客注意的显著位置。  公众乘坐或者操作电梯、客运索道、大型游乐设施，应当遵守安全使用说明和安全注意事项的要求，服从有关工作人员的管理和指挥；遇有运行不正常时，应当按照安全指引，有序撤离。  **第四十四条** 锅炉使用单位应当按照安全技术规范的要求进行锅炉水（介）质处理，并接受特种设备检验机构的定期检验。  从事锅炉清洗，应当按照安全技术规范的要求进行，并接受特种设备检验机构的监督检验。  **第四十五条** 电梯的维护保养应当由电梯制造单位或者依照本法取得许可的安装、改造、修理单位进行。  电梯的维护保养单位应当在维护保养中严格执行安全技术规范的要求，保证其维护保养的电梯的安全性能，并负责落实现场安全防护措施，保证施工安全。  电梯的维护保养单位应当对其维护保养的电梯的安全性能负责；接到故障通知后，应当立即赶赴现场，并采取必要的应急救援措施。  **第四十六条** 电梯投入使用后，电梯制造单位应当对其制造的电梯的安全运行情况进行跟踪调查和了解，对电梯的维护保养单位或者使用单位在维护保养和安全运行方面存在的问题，提出改进建议，并提供必要的技术帮助；发现电梯存在严重事故隐患时，应当及时告知电梯使用单位，并向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报告。电梯制造单位对调查和了解的情况，应当作出记录。  **第四十七条** 特种设备进行改造、修理，按照规定需要变更使用登记的，应当办理变更登记，方可继续使用。  **第四十八条** 特种设备存在严重事故隐患，无改造、修理价值，或者达到安全技术规范规定的其他报废条件的，特种设备使用单位应当依法履行报废义务，采取必要措施消除该特种设备的使用功能，并向原登记的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办理使用登记证书注销手续。  前款规定报废条件以外的特种设备，达到设计使用年限可以继续使用的，应当按照安全技术规范的要求通过检验或者安全评估，并办理使用登记证书变更，方可继续使用。允许继续使用的，应当采取加强检验、检测和维护保养等措施，确保使用安全。  **第四十九条** 移动式压力容器、气瓶充装单位，应当具备下列条件，并经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许可，方可从事充装活动：  （一）有与充装和管理相适应的管理人员和技术人员；  （二）有与充装和管理相适应的充装设备、检测手段、场地厂房、器具、安全设施；  （三）有健全的充装管理制度、责任制度、处理措施。  充装单位应当建立充装前后的检查、记录制度，禁止对不符合安全技术规范要求的移动式压力容器和气瓶进行充装。  气瓶充装单位应当向气体使用者提供符合安全技术规范要求的气瓶，对气体使用者进行气瓶安全使用指导，并按照安全技术规范的要求办理气瓶使用登记，及时申报定期检验。  **第三章 检验、检测**  **第五十条** 从事本法规定的监督检验、定期检验的特种设备检验机构，以及为特种设备生产、经营、使用提供检测服务的特种设备检测机构，应当具备下列条件，并经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核准，方可从事检验、检测工作：  （一）有与检验、检测工作相适应的检验、检测人员；  （二）有与检验、检测工作相适应的检验、检测仪器和设备；  （三）有健全的检验、检测管理制度和责任制度。  **第五十一条** 特种设备检验、检测机构的检验、检测人员应当经考核，取得检验、检测人员资格，方可从事检验、检测工作。  特种设备检验、检测机构的检验、检测人员不得同时在两个以上检验、检测机构中执业；变更执业机构的，应当依法办理变更手续。  **第五十二条** 特种设备检验、检测工作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的规定，并按照安全技术规范的要求进行。  特种设备检验、检测机构及其检验、检测人员应当依法为特种设备生产、经营、使用单位提供安全、可靠、便捷、诚信的检验、检测服务。  **第五十三条** 特种设备检验、检测机构及其检验、检测人员应当客观、公正、及时地出具检验、检测报告，并对检验、检测结果和鉴定结论负责。  特种设备检验、检测机构及其检验、检测人员在检验、检测中发现特种设备存在严重事故隐患时，应当及时告知相关单位，并立即向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报告。  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应当组织对特种设备检验、检测机构的检验、检测结果和鉴定结论进行监督抽查，但应当防止重复抽查。监督抽查结果应当向社会公布。  **第五十四条** 特种设备生产、经营、使用单位应当按照安全技术规范的要求向特种设备检验、检测机构及其检验、检测人员提供特种设备相关资料和必要的检验、检测条件，并对资料的真实性负责。  **第五十五条** 特种设备检验、检测机构及其检验、检测人员对检验、检测过程中知悉的商业秘密，负有保密义务。  特种设备检验、检测机构及其检验、检测人员不得从事有关特种设备的生产、经营活动，不得推荐或者监制、监销特种设备。  **第五十六条** 特种设备检验机构及其检验人员利用检验工作故意刁难特种设备生产、经营、使用单位的，特种设备生产、经营、使用单位有权向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投诉，接到投诉的部门应当及时进行调查处理。  **第四章 监督管理**  **第五十七条** 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依照本法规定，对特种设备生产、经营、使用单位和检验、检测机构实施监督检查。  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应当对学校、幼儿园以及医院、车站、客运码头、商场、体育场馆、展览馆、公园等公众聚集场所的特种设备，实施重点安全监督检查。  **第五十八条** 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实施本法规定的许可工作，应当依照本法和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的条件和程序以及安全技术规范的要求进行审查；不符合规定的，不得许可。  **第五十九条** 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在办理本法规定的许可时，其受理、审查、许可的程序必须公开，并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三十日内，作出许可或者不予许可的决定；不予许可的，应当书面向申请人说明理由。  **第六十条** 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对依法办理使用登记的特种设备应当建立完整的监督管理档案和信息查询系统；对达到报废条件的特种设备，应当及时督促特种设备使用单位依法履行报废义务。  **第六十一条** 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在依法履行监督检查职责时，可以行使下列职权：  （一）进入现场进行检查，向特种设备生产、经营、使用单位和检验、检测机构的主要负责人和其他有关人员调查、了解有关情况；  （二）根据举报或者取得的涉嫌违法证据，查阅、复制特种设备生产、经营、使用单位和检验、检测机构的有关合同、发票、账簿以及其他有关资料；  （三）对有证据表明不符合安全技术规范要求或者存在严重事故隐患的特种设备实施查封、扣押；  （四）对流入市场的达到报废条件或者已经报废的特种设备实施查封、扣押；  （五）对违反本法规定的行为作出行政处罚决定。  **第六十二条** 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在依法履行职责过程中，发现违反本法规定和安全技术规范要求的行为或者特种设备存在事故隐患时，应当以书面形式发出特种设备安全监察指令，责令有关单位及时采取措施予以改正或者消除事故隐患。紧急情况下要求有关单位采取紧急处置措施的，应当随后补发特种设备安全监察指令。  **第六十三条** 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在依法履行职责过程中，发现重大违法行为或者特种设备存在严重事故隐患时，应当责令有关单位立即停止违法行为、采取措施消除事故隐患，并及时向上级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报告。接到报告的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应当采取必要措施，及时予以处理。  对违法行为、严重事故隐患的处理需要当地人民政府和有关部门的支持、配合时，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应当报告当地人民政府，并通知其他有关部门。当地人民政府和其他有关部门应当采取必要措施，及时予以处理。  **第六十四条** 地方各级人民政府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不得要求已经依照本法规定在其他地方取得许可的特种设备生产单位重复取得许可，不得要求对已经依照本法规定在其他地方检验合格的特种设备重复进行检验。  **第六十五条** 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的安全监察人员应当熟悉相关法律、法规，具有相应的专业知识和工作经验，取得特种设备安全行政执法证件。  特种设备安全监察人员应当忠于职守、坚持原则、秉公执法。  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实施安全监督检查时，应当有二名以上特种设备安全监察人员参加，并出示有效的特种设备安全行政执法证件。  **第六十六条** 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对特种设备生产、经营、使用单位和检验、检测机构实施监督检查，应当对每次监督检查的内容、发现的问题及处理情况作出记录，并由参加监督检查的特种设备安全监察人员和被检查单位的有关负责人签字后归档。被检查单位的有关负责人拒绝签字的，特种设备安全监察人员应当将情况记录在案。  **第六十七条** 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及其工作人员不得推荐或者监制、监销特种设备；对履行职责过程中知悉的商业秘密负有保密义务。  **第六十八条** 国务院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应当定期向社会公布特种设备安全总体状况。  **第五章 事故应急救援与调查处理**  **第六十九条** 国务院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应当依法组织制定特种设备重特大事故应急预案，报国务院批准后纳入国家突发事件应急预案体系。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及其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应当依法组织制定本行政区域内特种设备事故应急预案，建立或者纳入相应的应急处置与救援体系。  特种设备使用单位应当制定特种设备事故应急专项预案，并定期进行应急演练。  **第七十条** 特种设备发生事故后，事故发生单位应当按照应急预案采取措施，组织抢救，防止事故扩大，减少人员伤亡和财产损失，保护事故现场和有关证据，并及时向事故发生地县级以上人民政府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和有关部门报告。  县级以上人民政府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接到事故报告，应当尽快核实情况，立即向本级人民政府报告，并按照规定逐级上报。必要时，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可以越级上报事故情况。对特别重大事故、重大事故，国务院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应当立即报告国务院并通报国务院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等有关部门。  与事故相关的单位和人员不得迟报、谎报或者瞒报事故情况，不得隐匿、毁灭有关证据或者故意破坏事故现场。  **第七十一条** 事故发生地人民政府接到事故报告，应当依法启动应急预案，采取应急处置措施，组织应急救援。  **第七十二条** 特种设备发生特别重大事故，由国务院或者国务院授权有关部门组织事故调查组进行调查。  发生重大事故，由国务院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会同有关部门组织事故调查组进行调查。  发生较大事故，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会同有关部门组织事故调查组进行调查。  发生一般事故，由设区的市级人民政府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会同有关部门组织事故调查组进行调查。  事故调查组应当依法、独立、公正开展调查，提出事故调查报告。  **第七十三条** 组织事故调查的部门应当将事故调查报告报本级人民政府，并报上一级人民政府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备案。有关部门和单位应当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追究事故责任单位和人员的责任。  事故责任单位应当依法落实整改措施，预防同类事故发生。事故造成损害的，事故责任单位应当依法承担赔偿责任。  **第六章 法律责任**  **第七十四条** 违反本法规定，未经许可从事特种设备生产活动的，责令停止生产，没收违法制造的特种设备，处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已经实施安装、改造、修理的，责令恢复原状或者责令限期由取得许可的单位重新安装、改造、修理。  **第七十五条** 违反本法规定，特种设备的设计文件未经鉴定，擅自用于制造的，责令改正，没收违法制造的特种设备，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  **第七十六条** 违反本法规定，未进行型式试验的，责令限期改正；逾期未改正的，处三万元以上三十万元以下罚款。  **第七十七条**　违反本法规定，特种设备出厂时，未按照安全技术规范的要求随附相关技术资料和文件的，责令限期改正；逾期未改正的，责令停止制造、销售，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第七十八条** 违反本法规定，特种设备安装、改造、修理的施工单位在施工前未书面告知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即行施工的，或者在验收后三十日内未将相关技术资料和文件移交特种设备使用单位的，责令限期改正；逾期未改正的，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  **第七十九条** 违反本法规定，特种设备的制造、安装、改造、重大修理以及锅炉清洗过程，未经监督检验的，责令限期改正；逾期未改正的，处五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吊销生产许可证。  **第八十条** 违反本法规定，电梯制造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责令限期改正；逾期未改正的，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  （一）未按照安全技术规范的要求对电梯进行校验、调试的；  （二）对电梯的安全运行情况进行跟踪调查和了解时，发现存在严重事故隐患，未及时告知电梯使用单位并向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报告的。  **第八十一条** 违反本法规定，特种设备生产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限期改正；逾期未改正的，责令停止生产，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吊销生产许可证：  （一）不再具备生产条件、生产许可证已经过期或者超出许可范围生产的；  （二）明知特种设备存在同一性缺陷，未立即停止生产并召回的。  违反本法规定，特种设备生产单位生产、销售、交付国家明令淘汰的特种设备的，责令停止生产、销售，没收违法生产、销售、交付的特种设备，处三万元以上三十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特种设备生产单位涂改、倒卖、出租、出借生产许可证的，责令停止生产，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吊销生产许可证。  **第八十二条** 违反本法规定，特种设备经营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停止经营，没收违法经营的特种设备，处三万元以上三十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一）销售、出租未取得许可生产，未经检验或者检验不合格的特种设备的；  （二）销售、出租国家明令淘汰、已经报废的特种设备，或者未按照安全技术规范的要求进行维护保养的特种设备的。  违反本法规定，特种设备销售单位未建立检查验收和销售记录制度，或者进口特种设备未履行提前告知义务的，责令改正，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  特种设备生产单位销售、交付未经检验或者检验不合格的特种设备的，依照本条第一款规定处罚；情节严重的，吊销生产许可证。  **第八十三条** 违反本法规定，特种设备使用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限期改正；逾期未改正的，责令停止使用有关特种设备，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  （一）使用特种设备未按照规定办理使用登记的；  （二）未建立特种设备安全技术档案或者安全技术档案不符合规定要求，或者未依法设置使用登记标志、定期检验标志的；  （三）未对其使用的特种设备进行经常性维护保养和定期自行检查，或者未对其使用的特种设备的安全附件、安全保护装置进行定期校验、检修，并作出记录的；  （四）未按照安全技术规范的要求及时申报并接受检验的；  （五）未按照安全技术规范的要求进行锅炉水（介）质处理的；  （六）未制定特种设备事故应急专项预案的。  **第八十四条** 违反本法规定，特种设备使用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停止使用有关特种设备，处三万元以上三十万元以下罚款：  （一）使用未取得许可生产，未经检验或者检验不合格的特种设备，或者国家明令淘汰、已经报废的特种设备的；  （二）特种设备出现故障或者发生异常情况，未对其进行全面检查、消除事故隐患，继续使用的；  （三）特种设备存在严重事故隐患，无改造、修理价值，或者达到安全技术规范规定的其他报废条件，未依法履行报废义务，并办理使用登记证书注销手续的。  **第八十五条** 违反本法规定，移动式压力容器、气瓶充装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改正，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吊销充装许可证：  （一）未按照规定实施充装前后的检查、记录制度的；  （二）对不符合安全技术规范要求的移动式压力容器和气瓶进行充装的。  违反本法规定，未经许可，擅自从事移动式压力容器或者气瓶充装活动的，予以取缔，没收违法充装的气瓶，处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第八十六条** 违反本法规定，特种设备生产、经营、使用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责令限期改正；逾期未改正的，责令停止使用有关特种设备或者停产停业整顿，处一万元以上五万元以下罚款：  （一）未配备具有相应资格的特种设备安全管理人员、检测人员和作业人员的；  （二）使用未取得相应资格的人员从事特种设备安全管理、检测和作业的；  （三）未对特种设备安全管理人员、检测人员和作业人员进行安全教育和技能培训的。  **第八十七条** 违反本法规定，电梯、客运索道、大型游乐设施的运营使用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责令限期改正；逾期未改正的，责令停止使用有关特种设备或者停产停业整顿，处二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  （一）未设置特种设备安全管理机构或者配备专职的特种设备安全管理人员的；  （二）客运索道、大型游乐设施每日投入使用前，未进行试运行和例行安全检查，未对安全附件和安全保护装置进行检查确认的；  （三）未将电梯、客运索道、大型游乐设施的安全使用说明、安全注意事项和警示标志置于易于为乘客注意的显著位置的。  **第八十八条** 违反本法规定，未经许可，擅自从事电梯维护保养的，责令停止违法行为，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电梯的维护保养单位未按照本法规定以及安全技术规范的要求，进行电梯维护保养的，依照前款规定处罚。  **第八十九条** 发生特种设备事故，有下列情形之一的，对单位处五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罚款；对主要负责人处一万元以上五万元以下罚款；主要负责人属于国家工作人员的，并依法给予处分：  （一）发生特种设备事故时，不立即组织抢救或者在事故调查处理期间擅离职守或者逃匿的；  （二）对特种设备事故迟报、谎报或者瞒报的。  **第九十条** 发生事故，对负有责任的单位除要求其依法承担相应的赔偿等责任外，依照下列规定处以罚款：  （一）发生一般事故，处十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罚款；  （二）发生较大事故，处二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  （三）发生重大事故，处五十万元以上二百万元以下罚款。  **第九十一条** 对事故发生负有责任的单位的主要负责人未依法履行职责或者负有领导责任的，依照下列规定处以罚款；属于国家工作人员的，并依法给予处分：  （一）发生一般事故，处上一年年收入百分之三十的罚款；  （二）发生较大事故，处上一年年收入百分之四十的罚款；  （三）发生重大事故，处上一年年收入百分之六十的罚款。  **第九十二条** 违反本法规定，特种设备安全管理人员、检测人员和作业人员不履行岗位职责，违反操作规程和有关安全规章制度，造成事故的，吊销相关人员的资格。  **第九十三条** 违反本法规定，特种设备检验、检测机构及其检验、检测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改正，对机构处五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五千元以上五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吊销机构资质和有关人员的资格：  （一）未经核准或者超出核准范围、使用未取得相应资格的人员从事检验、检测的；  （二）未按照安全技术规范的要求进行检验、检测的；  （三）出具虚假的检验、检测结果和鉴定结论或者检验、检测结果和鉴定结论严重失实的；  （四）发现特种设备存在严重事故隐患，未及时告知相关单位，并立即向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报告的；  （五）泄露检验、检测过程中知悉的商业秘密的；  （六）从事有关特种设备的生产、经营活动的；  （七）推荐或者监制、监销特种设备的；  （八）利用检验工作故意刁难相关单位的。  违反本法规定，特种设备检验、检测机构的检验、检测人员同时在两个以上检验、检测机构中执业的，处五千元以上五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吊销其资格。  **第九十四条** 违反本法规定，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及其工作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由上级机关责令改正；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一）未依照法律、行政法规规定的条件、程序实施许可的；  （二）发现未经许可擅自从事特种设备的生产、使用或者检验、检测活动不予取缔或者不依法予以处理的；  （三）发现特种设备生产单位不再具备本法规定的条件而不吊销其许可证，或者发现特种设备生产、经营、使用违法行为不予查处的；  （四）发现特种设备检验、检测机构不再具备本法规定的条件而不撤销其核准，或者对其出具虚假的检验、检测结果和鉴定结论或者检验、检测结果和鉴定结论严重失实的行为不予查处的；  （五）发现违反本法规定和安全技术规范要求的行为或者特种设备存在事故隐患，不立即处理的；  （六）发现重大违法行为或者特种设备存在严重事故隐患，未及时向上级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报告，或者接到报告的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不立即处理的；  （七）要求已经依照本法规定在其他地方取得许可的特种设备生产单位重复取得许可，或者要求对已经依照本法规定在其他地方检验合格的特种设备重复进行检验的；  （八）推荐或者监制、监销特种设备的；  （九）泄露履行职责过程中知悉的商业秘密的；  （十）接到特种设备事故报告未立即向本级人民政府报告，并按照规定上报的；  （十一）迟报、漏报、谎报或者瞒报事故的；  （十二）妨碍事故救援或者事故调查处理的；  （十三）其他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行为。  **第九十五条** 违反本法规定，特种设备生产、经营、使用单位或者检验、检测机构拒不接受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依法实施的监督检查的，责令限期改正；逾期未改正的，责令停产停业整顿，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罚款。  特种设备生产、经营、使用单位擅自动用、调换、转移、损毁被查封、扣押的特种设备或者其主要部件的，责令改正，处五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吊销生产许可证，注销特种设备使用登记证书。  **第九十六条** 违反本法规定，被依法吊销许可证的，自吊销许可证之日起三年内，负责特种设备安全监督管理的部门不予受理其新的许可申请。  **第九十七条** 违反本法规定，造成人身、财产损害的，依法承担民事责任。  违反本法规定，应当承担民事赔偿责任和缴纳罚款、罚金，其财产不足以同时支付时，先承担民事赔偿责任。  **第九十八条** 违反本法规定，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七章 附 则**  **第九十九条** 特种设备行政许可、检验的收费，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第一百条** 军事装备、核设施、航空航天器使用的特种设备安全的监督管理不适用本法。  铁路机车、海上设施和船舶、矿山井下使用的特种设备以及民用机场专用设备安全的监督管理，房屋建筑工地、市政工程工地用起重机械和场（厂）内专用机动车辆的安装、使用的监督管理，由有关部门依照本法和其他有关法律的规定实施。  **第一百零一条** 本法自2014年1月1日起施行。 |